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 | |
|------|-------------|
| 등록번호 | 노인복지과-13569 |
| 등록일자 | 2016.5.27. |
| 결재일자 | 2016.5.30. |
| 공개구분 | 대시민공개 |

| | | | | | |
|-----|----------|--------|--------------|--|--|
| 주무관 | 재가노인복지팀장 | 노인복지과장 | 복지문화국장 | | |
| 이재희 | 인현숙 | 홍경일 | 05/30 김효길 | | |
| 협조자 | | | | | |

- 여름철 재난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

2016년 폭염대비 어르신 보호계획

1. 추진기간 : 2016. 5. 30(월) ~ 2016. 9. 30(금) (4개월간)

2. 폭염대비 어르신 보호대책 개요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 운영기간 : 2016. 5. 30(월) ~ 9. 30(금)
-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 개 소 수 : 총72개소(주민센터 22, 경로당 41, 복지관 8, 신한은행 강남구청 출장소 1)
- 쉼터종류 (일반 63개소, 연장 9개소)
 - 일반쉼터 : 평일(주말 미운영), 09시 ~ 18시
 - 연장쉼터 : 평일·주말·휴일 09시 ~ 21시 (평소에는 일반과 동일, 폭염특보 발령시 연장)

□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 안부확인 강화

-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및 돌보미를 ‘재난도우미’로 지정
-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폭염특보 발령 시 일괄 안전 확인

3. 소요예산 : 구비 9,700천원 + 재난구호기금 (시 복지정책과에서 자치구로 교부예정)

2015. 6. .

강 남 구
(노 인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 검토분야 | 확인 및 적시사항 |
|--|--|
| 관련 규정 및 근거 |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 2016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서울시 어르신복지과-9059, 2015.6.24) |
| 추진 경위 |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폭염에 대비하여 사전보호체계 점검 및 강화 |
| 예산 사항 |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비 9,700천원(홍보물제작 및 냉방비), 재난구호기금(냉방비 및 부대비용) ※ 무더위쉼터 보조금(재난구호기금) 지원외 추가비용 발생시 구비지원 |
| 수혜자 및 범위 |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무더위쉼터 이용자(일반인을 비롯하여 독거노인등) |
|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O)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O)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O) ⑤ 시장조사 ----- (O)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O)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
| 타 기관 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폭염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대책 시행 중 |
| 전문가 자문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여름철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2016년 폭염대비 어르신 보호계획

폭염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원함은 물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2016년도 특보발령기준 】

▶ 폭염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6~9월 일 최고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6~9월 일 최고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I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9059호(2016.5.24.) 2016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 강남구 재난안전과-8616호(2015.4.28.) 2016년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대표적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필요
 -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폭염 속에서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 특별보호 필요
 -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독거어르신 보호가 주목적
-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지원
 - 더 많은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대상 모니터링 강화

II 추진 개요

□ 노인인구 현황

(2016. 4월말 기준)

| 구 분 | 65세이상 어르신 | 독거어르신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폭염에 취약한 집중 관리대상 독거어르신 |
|-----|-----------|------------------------|--------------------------|
| 인구수 | 60,513명 | 10,892명 | 1,300여명 |

□ 추진기간 : 2016. 5. 30 ~ 2016. 9. 30 (4개월 간)

□ 폭염대비 어르신 보호대책 개요

○ 어르신 무더위쉼터

- 운영기간 : 2016. 5. 30(월) ~ 9. 30(금)
- 운영시간 : 평일(주말 미운영), 09시~18시
- 개 소 수 : 총72개소(주민센터 22, 경로당 41, 복지관 8, 신한은행강남출장소 1)
- 쉼터종류 (일반 63개소, 연장 9개소)
 - ① 일반쉼터 : 평일(주말 미운영), 09시 ~ 18시
 - ② 연장쉼터 : 평일·주말·휴일 09시 ~ 21시 (평소에는 일반과 동일, 폭염특보 발령시 연장)

○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 안부확인 강화

-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및 돌보미를 ‘재난도우미’로 지정
-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폭염특보 발령 시 일괄 안전 확인

III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 무더위 쉼터 지정 및 현황

(2016년 5월 26일 기준)

| 수용인원(명) | 지 정 장 소(개소) | | | | | 비고 |
|---------|-------------|------|-----|-----|------|----|
| | 소계 | 주민센터 | 경로당 | 복지관 | 신한은행 | |
| 2,653 | 72 | 22 | 41 | 8 | 1 | |

※ 효과적인 쉼터운영을 위해 냉방비(에어컨)작동여부 및 쉼터의 청결성 등을 사전 점검 후 지정

□ 무더위 쉼터 운영

- 모든쉼터에 전담 관리자 지정
 - 경 로 당 : 경로당 회장, 총무 등 임원 중 1명 지정
 - 복지관 및 주민센터 : 총괄 관리자 별도 지정
- 연장쉼터(경로당) 운영에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연장쉼터 관리책임자를 자원봉사자로 지정
 - ※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 : 평일 1일당 8,000원 / 휴일·주말 1일당 10,000원
 - (연장쉼터 자원봉사자는 평일 오후 6~9시, 주말·휴일 09시~21시 근무)
- 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26~28℃에서 자율적 운영
- 무더위쉼터 간판 게시
 -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홍보

□ 쉼터 보조금 지원

| 구분 | | 경로당 | 복지관, 주민센터, 은행 |
|--------------------------|---------------------|--|--|
| 냉방비 | 일반쉼터 | 3만원× 6월, 9월= 6만원 5만원× 7월, 8월= 10만원 (경로당냉방비 활용) ----- 총 16만원 | - 정상근무시간 운영이므로 지원없음 |
| | 일반쉼터 이면서 연장쉼터 | 일반쉼터 16만원+ 연장쉼터 5만원= 총 21만원 | - 5만원 지원 |
| 자원봉사자 활동비 | | - 평일 폭염 발령시 경로당 연장쉼터 21시까지 근무 → 일당 8천원 지원 - 휴일 및 주말에 폭염 발령시 경로당 연장쉼터 21시 까지 근무 → 일당 10천원 지원 | - 복지관 연장쉼터 (개소당 1인) 평 일 : 6,030원×3시간=18,090원 휴일·주말 : 6,030원×12시간=72,360원 |
| 부대비용 (간판 및 냉방기 수리) | | - 신규지정일 경우 간판비 5만원지원 | |

○ 냉방비

- 일반쉼터 : 정상근무시간에 운영되므로 경로당 냉방비만 지원하고, 복지관 및 주민센터는 별도 지원 없음.

※ 아파트 경로당은 냉방비 부담 주체인 관리실에 직접 지급하되,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안내

- 연장쉼터 : 월5만원 추가 지급

○ 경로당 연장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 경로당 개소당 1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일당 8,000원~ 10,000원)지원

○ 부대경비 (구비활용)

- 지원 가능물품 : 간판비, 에어컨 수리비, 냉방 관련 물품비(선풍기, 에어매트, 얼음 등)

<연장쉼터 지원인력 운영기준>

- ▷ 전년도 폭염기간(7일)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30일 기준 지원
※ 평일 20일, 휴일·주말 10일

□ 무더위쉼터 주관부서 : 재난안전과 총괄

- 어르신무더위쉼터에 대한 제반 업무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되 노인복지과는 운영지원 담당

IV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

-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독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 무더위 쉼터 정보 숙지 및 안내 강화
- 폭염 특보 발효시 상황 신속 전파, 안전 확인 집중 서비스 등 실시

폭염주의·경보시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방안

- 수도권기상청에서 폭염 특보 발령시 재난도우미(구청 및 주민센터 노인담당, 돌보미, 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총89명)에게 기상특보 문자를 발송함.
 - 폭염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독거 어르신의 안전확인 (안부 전화 또는 방문) 및 행동요령을 이행하도록 조치함.
(붙임2 : 행동요령 참고)
 - 폭염 기간동안 독거어르신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연계
 - 어르신에게 '무더위쉼터'에 대한 안내 및 필요시 동반 방문
- ※ 폭염으로 인한 독거어르신 피해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 조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서비스관리자 → 구청 → 시 → 보건복지부)

□ 어르신돌봄통합관리시스템 어르신지원 DB자료 활용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카드를 바탕으로 어르신돌봄서비스 사업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과 상호 정보교환 및 상황 대처
- 재가관리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혜어르신 관리자료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상황 유지

□ 주민행동요령 등 안내·홍보

- 관계 부서, 기관 담당을 통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내용, 위치에 대한 홍보
- 주민센터, 주요 어르신 이용시설에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에 대한 응급 조치요령 등을 비치, 포스터 부착
- 복지서비스 제공자 활용하여 수시로 재가어르신에게 행동요령, 비상연락처, 쉼터위치, 기상정보 등 제공

V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700천원 + 재난구호기금

- 구(區)비 : 9,700천원
 - 사무관리비(홍보물 제작), 경로당 냉방비(부대경비)보조

○ 산출 내역

| | 구분 | 소요액 | 산출근거 |
|-----------|---------------|----------|--|
| | 총계 | 19,876천원 | |
| 재난구호기금교부시 | 계 | 10,176천원 | |
| | 냉방비 | 7,010천원 | · 경로당(일반) 30천원×2개월×41개소 = 2,460천원 · 경로당(일반) 50천원×2개월×41개소 = 4,100천원 → 경로당 냉방비로 지급 · 경로당(연장) 50천원×1개월×8개소 = 400천원 · 복지관(연장) 50천원×1개월×1개소 = 50천원 |
| | 자원봉사자 활동비(실비) | 3,166천원 | · 평일경로당(연장) 8천원×8개소×1명×20일 = 1,280천원 · 휴일경로당(연장) 10천원×8개소×1명×10일 = 800천원 · 평일복지관(연장) 6,030원×1개소×3시간×20일 = 362천원 · 휴일복지관(연장) 6,030원×1개소×12시간×10일 = 724천원 |
| 구비 | 계 | 9,700천원 | |
| | 사무관리비 | 2,200천원 | · 홍보물 제작 |
| | 냉방비 | 7,500천원 | · 부대경비 및 경로당 냉방비 등 지원 |

□ 행정사항

- 무더위쉼터 냉방비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예산 교부 : 2016. 6월 중
- 쉼터 홍보물 제작, 반상회보 · 강남구청 뉴스 등 홍보 : 2016. 6월 중
- 구청 홈페이지에 무더위쉼터 홍보(관내도에 쉼터 위치가 표시된 팝업창 활용)
: 2016년 6월 초
- 쉼터 안내 간판 부착, 실내 온도 확인 등 현장점검 실시 : 2016. 7월~8월
- 청장님 2회, 부구청장님 1회 무더위쉼터 방문 : 2016. 7월~8월
- 무더위쉼터 냉방비 경로당 및 연장쉼터 정산 : 2016. 10월 초
-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교부받을 재난구호기금이 부족할 경우 구 냉방비 (7,500천원)에서 부대경비 및 냉방비를 지급할 예정임. 끝.